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8. . . (제 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제·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융합이 광범위하고 급속히 진행되어 산업 구조의 전면 개편과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음. 이제 소프트웨어는 개인·기업·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가치 창출의 중심으로, 각 주체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기존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성 보장에 치우쳐 소프트웨어산업 전체를 균형있게 육성하지 못했으며,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위주의 발전정책에 한정되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산업적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사회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창의와 기업의 혁신을 이끌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제명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변경함
(안 제명)
- 나.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역량 강화를 통해 국

- 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다. 소프트웨어융합, 소프트웨어교육, 소프트웨어안전, 소프트웨어문화 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안 제3조)
- 라.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진흥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 마. 무형의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가치를 보장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 바.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창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소프트웨어창업을 촉진하고 우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존 창업공간 제공의 한정된 지원에서 소프트웨어 인력의 창업 촉진, 소프트웨어기술 금융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27조)
- 사.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에 대비하여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 인력양성과 소프트웨어 인력의 경력개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 아. 지능정보기술의 근간인 소프트웨어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분야 기초 연구를 진흥하고, 개방형 기술혁신을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 자. 정부는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하여 타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분야와 소프트웨어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수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차. 소프트웨어가 국가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그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로 인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안전 기준에 관한 고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 의무 및 소프트웨어안전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카. 전 국민의 소프트웨어 기초소양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교육의 지속적·체계적 지원을 위해 교육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도록 함(안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당사자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계약의 원칙을 마련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과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45조)

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활용 촉진과 적절한 대가지급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을 일부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0조)

거. 정부가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편성 시 민간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51조)

너.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과 공시 의무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요청 및 사업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를 수용하도록 함(안 제52조)

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요구사항 상세화 수준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머. 국가기관등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범위를 심의·확정하고,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사항을 심의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61조)

버.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을 분석·설계하는 사업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

서.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찰공고 시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안할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도록 함(안 제66조)

어.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실제

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68조)

저.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쟁의 조정절차와 조정의 효력에 대해 규정함(안 제 69조부터 제80조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국민의 창의와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융합”이란 소프트웨어와 다른 분야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5.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소프트웨어문화”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행동방식, 가치관, 규범 등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생활양식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교육”이란 소프트웨어의 활용 및 구현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 인식과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의미한다.
8. “소프트웨어안전”이란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9. “국가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0.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 및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11. “상용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소프트웨어(서비스의 형태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공개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가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그의 활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3.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4.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련의 방법, 절차, 활동 등을 말한다.
15.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6. “소프트웨어진흥단지”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17. “발주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국외에서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 본다)를 말한다.
18.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

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9.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하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하도급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1.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자(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융합을 촉진하여 다른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며, 국민경제의 주요 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각 기업들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가 사회에 널리 쓰이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소프트웨어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위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만든 창의적 결과물인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는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조성

제1절 진흥체계 구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지원 등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소프트웨어융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지역 특성 기반의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2. 소프트웨어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기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실태 및 통계
2. 소프트웨어 인력 현황 및 수급 전망
3.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4. 소프트웨어융합 관련 실태 및 통계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등, 기업, 연구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

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 요건과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진흥시설 등의 지정 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9조제4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3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속된 관련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사항 및 신고 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방법,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 절차, 제4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기술 수준, 연구 동향, 시장 동향, 사업자 현황 및 기술인력 현황 등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및 제81조에 따

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수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자료가 국가안보에 관한 내용이거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 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의 부문별 육성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지역소프트웨어진흥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진흥 지원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

진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진흥기관(이하 “지역진흥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진흥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진흥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제, 금융, 그 밖에 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2. 소프트웨어 산업 통계, 정보 분석·제공 및 공유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정부는 정책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2절 표준화와 인증

제23조(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개발 및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품

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프로세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경우
- ⑤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소프트웨어 유통 활성화)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품 소프트웨어의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활동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창업과 해외진출

제27조(소프트웨어사업 창업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인력의 창업 촉진
2. 소프트웨어융합 기반의 창업 활성화
3. 소프트웨어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4. 소프트웨어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창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해외 연구소 설치, 현지 맞춤형, 품질 확보 등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절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활성화

제29조(소프트웨어 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에 관하여 창의적 역량을 갖춘 우수 소프트웨어 인력의 양성 및 지속적인 자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소프트웨어 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프트웨어 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학교나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나 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소프트웨어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실기교육을 통한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산학연 연계 인력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계·학계·연구계 상호 간 연계·협력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및 융합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기업, 연구기관 등 간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훈련·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2. 고용 확대를 위한 학교와 기업 간 특별계약 고용제도 개발 및 시행
3. 교육·훈련 등을 위한 학교, 기업, 연구기관 등 간 인력 교류
4. 학교, 기업, 연구기관 등 간 시설·장비·인력 등 교육 및 연구개발 자원의 공동 활용 및 지원
5. 학교, 기업, 연구기관 등 간 교육 및 연구개발 정보·데이터의 공동

활용 및 교류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및 자
질향상을 위해 산·학·연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경력개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인력이
체계적으로 경력을 개발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융합 각 분야의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경
로 설계, 경력개발 및 관리를 지원하고, 경력과 역량에 따라 정당하
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
어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우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웨
어역량을 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
며 이를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에 관한 방법·절차·
내용·대상·시기 및 기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소프트웨어 인재 발굴 및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英才를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英才의 발굴 및 육성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한다.

제34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

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활성화) ① 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융합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어 공개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거나 원시코드 등 결과물을 공개 또는 공개소프트웨어개발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초연구를 진흥하여야 한다.

제36조(연구활동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만, 각종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2. 제1호의 학교와 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원 및 연구원에 상응하는 연구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대상자에게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

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는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자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연구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프트웨어융합 및 소프트웨어교육 확산

제1절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및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제37조(소프트웨어융합 촉진) ①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프트웨어 융합을 활성화하여 다른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분야와 소프트웨어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범사업, 수출지원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소프트웨어안전 기준)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안전

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일반기준(이하 ‘일반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안전 관련 위험분석
2. 소프트웨어안전 보장 설계 및 구현방법
3. 소프트웨어안전 검증 방법
4. 운영 단계의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방안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일반안전기준을 참조하여 소관 분야별로 소프트웨어안전의 세부기준(이하 ‘세부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 별도의 기준 및 조치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39조(소프트웨어안전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로 위험의 발생빈도와 피해의 심각도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프트웨어(이하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개발, 제작 또는 생산하는 자는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세부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등은 제38조제3항에 따른 세부안전기준에 운영기준이 포함된 경우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 또는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기구(명칭을 불문한다)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사고원인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지정과 해제, 제4항의 사고조사 소프트웨어전문가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소프트웨어안전 전문기관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안전기술 연구
2. 소프트웨어 안전산업 진흥
3.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지원
4. 소프트웨어 안전정보 축적 및 활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안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소프트웨어교육 및 소프트웨어문화 조성

제41조(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 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 개발
3. 지역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운영
4.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 확산
5.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시책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소프트웨어문화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협력과 개방, 창의에 기반한 소프트웨어 개발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소프트웨어기술자 우대 등)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 복지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등을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복지지원 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금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복지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

제1절 통칙

제45조(공정계약의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 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3.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내용을 일방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7.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제46조(표준계약서의 개발 및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

의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다양한 유형에 맞는 각각의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7조(발주기술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기관등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기타 협회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불이익행위등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7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의 불이익행위등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으로 본다.

제2절 공공소프트웨어사업

- 제49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2회 이상 소관 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 추진계획을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과 제2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횟수·시기·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의 활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정보의 수집·분석
2. 상용소프트웨어 활용촉진을 위한 품질의 검증 및 기술지원
3.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4. 상용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5.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적정한 대가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용소프트웨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식별 정보
2. 상용소프트웨어 운영환경
3. 상용소프트웨어 구성요소 및 적용 표준
4. 상용소프트웨어의 기능성·신뢰성·사용성·유지관리성 등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적정한 대가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2. 제56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제공
3. 제57조에 따른 요구사항 상세화
4. 제58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5. 제6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6. 제6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7. 제66조제2항에 따른 작업장소
8. 제6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출물의 활용보장

제51조(서비스형 소프트웨어의 우선활용) ① 정부는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민간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제50조제5항1호부터 제8호까지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유지보수, 그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수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를 요청하거나 사업추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영향평가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제3항의 공시 방법과 절차 등 영향평가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민간투자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 ① 국가기관등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

2. 민간부문의 수익 추구가 가능한 사업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민간투자소프트웨어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상사업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대상사업의 지정, 사업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4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평가시험”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 구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평가시험을 의뢰받은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의 의견을 들어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 평가시험을 실시할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시험기관은 비용의 일부를 소프트웨어 제품을 공급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시험결과를 산출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신청절차, 제4항의 비용부담 등 품질성능 평가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지급) ① 국가기관등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국가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수행환경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도구
3. 소프트웨어사업 비용·일정·규모·공수(工數)
4. 소프트웨어사업 품질특성 정보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한 대가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인건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요구사항 상세화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과업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상세한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

업의 상세한 요구사항을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 상세화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8조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준수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종료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9조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견제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사업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제58조의 적정 사업기간을 충실히 산정하였는지 여부

3. 그밖에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결과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한 기준과 제2항의 보완요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범위의 기준(계약문서 또는 분석설계 결과) 지정

2. 과업변경의 적절성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② 과업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확정된 과업범위의 기준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소프트웨어사업의 설계·구현사업 분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소프트웨어산출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나의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사업(이하 “설계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이하 “구현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의 설계사업과 구현사업을 별도로 발주할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현사업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설계사업과 구현사업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하여 발주자인 국가기관등의 장과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계사업과 구현사업을 별도로 발주할 경우 제안요청서·설계서 등의 작성과 계약에 관한 기준, 사업관리 및 품질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원활하게 설계사업과 구현사업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다.

제63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입찰공고 시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전항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사업기간 중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금액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2. 국방·외교·치안·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제53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공공소프트웨어사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

유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감독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법령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진하는 소프트

웨어사업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법령준수 정도가 우수한 국가기관등과 발주자에게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작업장소)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작업장소를 정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작업장소에 관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보안요구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안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제67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제68조(소프트웨어산출물의 활용 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이 해당 기관의 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반출한 소프트웨어산출물 중 계약서에 유출금지대상으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할 때 계약상대자가 소프트웨어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일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반출한 소프트웨어산출물에 유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2. 소프트웨어산출물을 승인없이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3. 소프트웨어산출물이 권한없는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
- ⑤ 제1항의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 요청 및 승인 등의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절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제69조(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
2. 소프트웨어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자 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3. 수급인과 제3자 간의 소프트웨어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분쟁
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5.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의 책임 또는 계약체결에 관한 분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법학이나 소프트웨어 전공자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절차는 비공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가 아닌 자는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0조(조정위원회 업무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의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3.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3조(분쟁의 조정) ①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서 행하며, 이 경우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분쟁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한다.

③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6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조정부의 개의 및 의결절차는 조정위원회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⑦ 상대방이 국가기관등인 경우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제5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74조(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5조(조정거부·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조정의 성립)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73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
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제78조(소멸시효의 중단) 제7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
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조정비용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0조(비밀 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제81조(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상호협동
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각종 자금대여와 보
증 등의 사업을 하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

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향상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려는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성능보험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8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공제부금·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84조(공제규정) ① 공제조합은 제82조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 대상, 부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중 공제사업의 종류·대상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5조(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공제 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준비금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공제조합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87조(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제88조(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除名)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 자본금의 감소 절차
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 :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
- ③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은 그 출자증권의 지분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9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그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0조(이익금 등의 처리) ① 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3. 이익준비금의 적립
4. 사업준비금의 적립
5. 이익금의 배당

② 공제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민법」 제8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남은 재산 중 조합원의 출자금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1조(배상책임 등) ① 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92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 발급의 취소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진흥기관의 지정취소
3.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4. 제25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5. 제29조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6.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안전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7. 제55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제9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2. 제1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	
연 락 처	02-2110-1807